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완석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전 원 표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0년 10월 5일

나. 회부일자 : 2020년 10월 6일

3. 제안이유

충청북도 공공시설의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명기 하도록 하여 충청북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공시설의 건립비용의 공개방법 및 시기와 공개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비용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사,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 건립비용까지 명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 시민들이 관련 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데 있어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건립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석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저촉되지 않음.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 안 제3조는 공공시설 건립비용의 공개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4조는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의 범위를 10억 이상의 건립비용이 소요된 공공시설을 공개범위로 규정함.
 - 안 제5조는 안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소요된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도 안 제3조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0. 9.28. ~ '20.10. 4.)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관련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용” 하여 추진이 가능한 사항임.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명기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공공시설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것은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